



제 424회 국회 (임 시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3호)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72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3

I. 제안경위

1. 이만희의원안(2208323)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2. 이춘석의원안(2208372)

가.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24.

다. 회 부 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만희의원안(2208323)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2. 이춘석의원안(2208372)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 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만회의원안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시키고,(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제97조제5항제1호 삭제)

이춘석의원안은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시키려는 것임.
(안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현 행	이만회의원안	이춘석의원안
제97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제10조제4항제1호 를 위반하여 반려 동물을 유기한 소 유자등

현행	이만희의원안	이춘석의원안
1. (생략) 2. ~ 10.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④ ----- ----- -----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 ----- ----- ----- -----. <삭제>	⑤ ----- ----- ----- -----.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맹견 또는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12. (생략) ⑥ (생략)	2.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2.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¹⁾

이를 위반하여 ①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②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

(단위: 마리)

구 분	합 계	개	고양이	기타
2020	130,401	95,261	33,572	1,568
2021	118,273	84,723	32,098	1,452
2022	113,440	80,393	31,525	1,522
2023	113,072	80,467	30,889	1,71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1)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맹견을 제외한 동물 또는 반려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비교 】

유기한 동물 구분	처벌 수준		
	현행	이만희의원안	이춘석의원안
맹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3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과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최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³⁾ 「형법」상 단순 유기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2021. 2. 12. 시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 3. 22. 시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만희의원안의 경우 맹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대한 유기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벌금 300만원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한 반면, 이춘석의원안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법정형을 상향(벌금 300만원 이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는바,

반려동물과 그 외의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하여 달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춘석의원안에 따르면 유기한 동물이 반려동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상 유기한 동물이 맹견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맹견인 반려동물을 유기한 경우 법률 규정 간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소유자등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동물 유기 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려동물과 그 외 동물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할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만희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